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 7. 10.(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7. 3.
- 나. 제출자: 인천광역시장
- 다. 회부일자: 2018. 7. 3.
- 라. 상정일자: 제248회(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 7월 1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고태성 공감복지과장
 - 검토보고: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됨에 따라
-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같은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내 보훈단체에 위탁운영 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업명 :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 위탁내역

시설명	주 소	연면적	위탁기간(당초)	운영방식	위탁기관(당초)	비고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남구 승학길 39(문학동)	776.02㎡ (지하1층 지상3층)	2016.10.14. ~ 2018.10.13.(2년)	민간위탁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	

- 위탁기간 : 2018.10.14. ~ 2020.10.13.(2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입법배경

- 인천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¹⁾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별 검토

-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은 1996년 남구 문학동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건립되었고,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에 위탁하였으며, 특별히 위탁관리를 취소할 사유가 없었기에 수탁자가 재수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조례²⁾에 따라 별도의 시의회 동의없이 광복회에서 운영하여 오다가

1)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 :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제4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재수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 지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민간위탁·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2015. 09. 11.~2016. 06. 10)’의 결과에서 이미 개별 조례에서 위탁의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6.6.27.)에서 광복회관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음.
-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광복회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10월 13일자로 광복회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위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임.
- 아래 [표]의 광복회관 사용현황을 보면, 지하는 개인 화실로 임대 하여 월 3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조례 제6조3항3)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하여 회관 관리운영에 사용하도록 함을 따른 것이며, 1층은 무공수훈자회 사무실로, 2층은 광복회 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3층 회의실은 회의 또는 행사에 사용하고 있음.

[표] 광복회관 사용현황

(단위 : m²)

구분	계	지하	1층	2층	3층	비고
사용용도	-	화 실 (임 대)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광복회 사무실	대회의실	대지 (1,131)
(면적)	(777.02)	(121.98)	(247)	(203.52)	(203.52)	

- 조례에서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3) 제6조 (회관의 임대) ① 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대시설 및 대상자 선정, 임대료 책정등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대료는 수탁자가 징수·관리하되 회관 관리운영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단체에 위탁하도록 하였고, 인천시에는 관련 6개 단체가 있는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자체 상이군경복지회관과 보훈회관을 소유하고 있고, 재일학도 의용군 동지회는 개인사무실이 있으며, 회원수가 3명으로 모두 연로한 실정임.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따라서 광복회관의 민간위탁은 ‘선조들의 민족정신과 광복활동을 길이 빛내고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이라는 설치 목적과 그 간의 위탁관리 운영성과 및 민간위탁 요건을 갖춘 기타 보훈단체들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10개 구·군에 보훈회관이 있는지?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 바람.
 - 10개 군·구에서는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음.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7명(박종혁,김성준,김국환,박인동,유세움,이용선,전재운 위원)
-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7명(박종혁,김성준,김국환,박인동,유세움,이용선,전재운 위원)

7.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끝.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 이유

-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와 관련하여 「동 조례」 제4조 제①항 단서조항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단체에 위탁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 에 의거 보훈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의 설치 목적과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천광역시 관내 보훈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사업명 :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 위탁내역

시설명	주 소	연면적	위탁기간(당초)	운영방식	위탁기관(당초)	비고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남구 승학길 39(문학동)	776.02m ²	2016.10.14. ~ 2018.10.13.(2년)	민간위탁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	

- 위탁기간 : 2018.10.14 ~ 2020.10.13(2년)

□ 동의(승인) 사항 :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동의(승인)내용 : 민간위탁 결정